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2012. 9.



⟨불임 1⟩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만원 이하 벌금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수 집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 이 용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외 정보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미제공(제24조)	
	동의 획득 방법 위반(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만원 이하 벌금
위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탁	업무위탁 시 문서로 위탁 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만원 이하 벌금
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인 정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 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리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정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1천만원 이하 벌금
보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주 체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대한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권 익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보 호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홍보.마케팅 등 교습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양식 참고

미래정보컴퓨터학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미래정보컴퓨터학원은 학원 홍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학원 성과 홍보
 - 학원 홈페이지: www.miraeac.com
 - 현수막 부착 장소 : 학원 차량, 학원 벽면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출신학교, 입학예정 (대)학교
 - *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작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00.00.00.)로부터 1년
 - *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작성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셔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위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학원에서 제공하는 (<u>예) 학자금 지원</u>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미래정보컴퓨터학원 귀중

미래정보컴퓨터학원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출입구 1대, 각 강의실 3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복도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미래정보컴퓨터학원 원장 김은희

(전화 052-247-1113)

〈붙임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 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미래정보컴퓨터학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 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역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	고로 I	가음 고	나 같은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수행	한다.1)
1.										
2										

-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을"이 재위탁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 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 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 목적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__)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성명: 미래정보컴퓨터학원 원장 김은희 (인)

을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¹⁾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붙임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양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	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	수일		처리기간 10일	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대리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미래정보컴퓨터 학원 귀하

작성 방법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sqrt{}\,\,]$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sqrt{}\,\,]$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붙임 6〉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양식

개인정보([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가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반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열람 형태 []열람·시청 []시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물·인화물 []기타
방법 	열람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원 구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나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수 있습니다.
-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붙임 7〉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기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_
요구 내용		_ _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_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_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	_
	년 월 일 발신명의 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 할 수 있습니다	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	Σ

210mm×297

〈불임 8〉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 1 1 / 1 E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실적이 있는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기능 또는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해
	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 9〉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 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붙임 10〉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구분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시			
고용보험법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규정			
노인복지법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로교통법	운전면허학원 설치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善用)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 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			

게인 6도 포모티	d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25.3.7.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
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장치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	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
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
7.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
장치를 말한다.	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워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 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희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 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 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 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 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 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 저장 등의 처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 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 이해관계 가 있는 사항
-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 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 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 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 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 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 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다.
- 1. 보호위원회 위원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 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저문위원회에 충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③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운용에 관한 사항
-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
- 제9조(기본계획) ①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3 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 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 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해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 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단체 등에 개인 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 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 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 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 야 한다.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 11조제2항" 으로 본다.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 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 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 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 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다.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 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불이익의 내용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 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우: 파쇄 또는 소각
-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 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 하는 방법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 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 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 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 다.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 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① 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 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 이라 한 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공기관
-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 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 정보처리자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과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다.
-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 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 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교정시설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 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 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 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 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 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 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 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 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 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 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 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 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관계 전문가
-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 인
-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 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있다.
-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 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 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때 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 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 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 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우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운영자"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하는 방법

-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 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 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 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 사시설
-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 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 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 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때 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으로 본다.

-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 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 ·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회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 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 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 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 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사항
-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 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 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 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 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정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 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 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 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 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 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 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 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 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 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 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 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 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 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 의ㆍ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 호와 같다. 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 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볜 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 방법
-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 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 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 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 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
- 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햀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 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다.
- 무워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 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 에 상당하는 공무워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 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 당하는 공무워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 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 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 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 원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 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 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 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 의 장이 된다.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 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하다.

 -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 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 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 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또는 거절 사유

-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 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되는 개인정보파일
-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 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 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 ·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 구를 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 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 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 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 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 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 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 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 ·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 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다.
-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1. 정관 재직하였던 사람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 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의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 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42조(위원의 제최·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 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회피할 수 있다.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 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44조(처리기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우에도 또한 같다.
-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 은 경우
-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 한 경우
-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 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하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다.
-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 · ·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한 경우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 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 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 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 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 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용하기 전에 그 영 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 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 일 운용의 목적
-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 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 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세 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 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 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 워"이라 한다)
-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 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 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때 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 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 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 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워고 및 그 소송대리인
- 2. 피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 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 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 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 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 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 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②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 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 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 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 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 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해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 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 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알려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 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 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 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 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 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 제의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 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 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 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 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 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 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 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 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제50조(사무국 등)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 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 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 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 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万選)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 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지정한다.
-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 제70조(벌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 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츄 사건을 말한다.
- 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 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 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 (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 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 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 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 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공받은 자
-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 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 니하다.
- 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 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 · 제3항에 따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2조제2|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제61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한 자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 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 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 사 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하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자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 2. 위반행위를 한 자
-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의 내용 및 결과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 75조 제2항제5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 리 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 다.

제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안 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 ③ 국가공무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 전부장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제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및 201 3년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 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 ·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 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암호화 조치(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유식별정보에 관 한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 법 | "으로 한다.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보호법」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으로 한다.

⑨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 보 보호법 |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인정보 보호」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 영 시행 일부터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 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 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 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하다.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으로 한다.

Ⅲ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 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9항·제10항, 제64 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 |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다.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 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 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 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9.29. 제정]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 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 신위원회"로 한다.

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 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법률 제11274호 일부개정 2012. 02. 01.]

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 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항 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 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 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 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13호 일부개정 2012. 01. 13.]

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혂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 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 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② 삭제 〈2008.4.30〉
- 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전직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실업자
- 3.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 인 사람
- 4.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ㆍ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 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 런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 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법률 제11274호 일부개정 2012. 02. 01.]

-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이었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13호 일부개정 2012. 01. 13.]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
- 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 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 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 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발,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의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 사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법률 제10866호, 2011.7.21]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	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
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	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
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야 한다.
1. 실업자	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	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5.31〉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4. 삭제 〈2010.5.31〉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5. 삭제 〈2010.5.31〉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

그리지(어느려 게바버	그리지어느려 개바버 시해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법률 제10866호, 2011.7.2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	
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
	시에 관한 사무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
다.	한 사무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헌구경, 그 뒤에 격급경력개월군천에 필요한 사용은 대통령청으로 경한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법률 제11013호, 2011.8.4]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삭제
-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이 를 등록하여야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기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설치하는 시설 가운 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법률 제11402호, 2012.3.21]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법률 제11402호, 2012.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은 한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1169호, 2012.1.17]	[대통령령 제23955호, 2012.7.17, 일부개정]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1. 회원모집 시기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	3. 회원모집 인원	
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	
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	것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	
원 모집으로 본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	
령으로 정한다.	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1169호, 2012.1.17]	[대통령령 제23955호, 2012.7.17, 일부개정]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
지켜야 한다.	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
	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
	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000호, 2010.2.4]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단체를 말한다.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단체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
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	
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000호, 2010.2.4]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	
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	
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916호, 2011.7.25]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	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정원
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5. 강사명단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6. 교습비등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7. 시설과 설비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8. 개강 예정 연월일
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사.「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시설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
	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6호, 2011.7.25]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 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 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 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 · 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 1. 범죄경력조회서
-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3. 학력증명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 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야 한다.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여권 및 사증(杳證) 사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000호, 2010.2.4]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
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교육훈련	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학교 또는「고등교육법」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2.「고등교육법」제26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육시설
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	7.「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
을 마친 자	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000호, 2010.2.4]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한다.	